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| 의 안 번 호 | 제 호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11 . 8 . 29
발 의 자 : 차재홍위원 외 1인

## 1. 주 문

가.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## 2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 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